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수 당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고,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인상하며, 9급 상당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인상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7만원”을 “8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11만원”을 “12만원”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2항”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3항”으로,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를 “육아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장이나 파견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과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거나 30일 이상 출장 또는 파견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55퍼센트를”을 “55퍼센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9급, 9급 상당 및 전문경력관 다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

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3호 “별표 9 제1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차목의 수당”을 “별표 9 제11호차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호의 수당 및 제11호차목의 수당(제11호차목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호의 수당과 제11호차목의 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1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 금액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 금액
2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 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 금액
3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 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 금액
4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 금액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 금액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 금액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 금액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 금액		

별표 8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자동차 배출가스측정 부문		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	--	--------------------------------	--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의 제11호가목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를 3)으로 하고, 같은 란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산금

민원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30% 범위에서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의 제11호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이상: 월 4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30,000원 이하

별표 9 특수행정분야의 제11호차목의 지급대상란 중 “4급”을 “1급”으로,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정원의 21퍼센트 범위 내)”를 “공무원(정원의 24퍼센트 범위 내)”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1) 월 지급상한액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근무연수	근무연수
1급(상당) 또는 2급(상당) 공무원	300,000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공무원	200,000
5급(상당) 공무원	150,000
6급(상당) 이하 공무원	100,000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 중 “간 파견된”을 “간 또는 집행기관과 집행기관 상호 간 파견된”으로, 제3호 중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을 “근무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가족수당) ①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자녀	2. ---
가. 첫째 자녀: 월 <u>3만원</u>	가. ----- <u>5만원</u>
나. 둘째 자녀: 월 <u>7만원</u>	나. ----- <u>8만원</u>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u>11만원</u>	다. ----- <u>12만원</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 제2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u>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u>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 제3항 ----- ----- ----- ----- --- 육아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② (생략)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생략)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위해 출장이나 파견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과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거나 30일 이상 출장 또는 파견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 55퍼센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9급, 9급 상당 및 전
--	---

③ ~ ⑨ (생략)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생략) ② 삭제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상호 간에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1. ~ 12. (생략) 13. <u>별표 9 제1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카목의 수당</u> ④ ~ ⑬ (생략)	문경력관 다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③----- -----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u>별표 9 제11호카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호의 수당 및 제11호차목의 수당(제11호카목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호의 수당과 제11호차목의 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u> ④ ~ ⑬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3